

의안 번호	제3714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11월 17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12월 1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12월 15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12월 15일

2. 제안이유

- 가. 국민권익위원회 「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」 및 중소벤처기업부 음부즈만 지원단 「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」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, 용어의 정비, 조문 내용 보완, 중복내용 삭제 등 전반적인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재위탁, 재계약, 제3자 재위탁 용어 정의 규정(안 제2조)
- 나. 수탁기관 선정결과 이의신청 기한 확대 및 결과 통지 기한 축소(안 제13조)
- 다. 법률 용어 수정(안 제14조 및 제19조)
- 협약체결 → 위탁계약의 체결
 - 위탁의 취소 →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
- 라. 수탁기관의 의무 추가(안 제15조)
- 위탁시설·장비 등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
 - 수탁사무의 주요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 승인 의무
 - 수탁사무의 제3자 재위탁 원칙적 금지 의무
- 마.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위법·부당사항에 대한 인사조치 근거 마련(안 제22조)
- 바. 내용 상세화에 따른 전체적인 조제목, 조호, 조문 등 재정비
- 사. 불필요한 서식 삭제(별지 제1호서식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9. 주문사항 : 없음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